

## 투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



• 투표시간 오전6시 ~ 오후6시

### • 투표절차

- ① 본인 여부 확인 (신분증 제시)
- ② 투표용지 수령
- ③ 기표 (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 사용)
- ④ 투표함 투입

※ 재·보궐 선거가 있는 경우 추가 용지 수령

※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 금지

※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권고



## 꼭 기억하세요!



• 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 
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

※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무원증, 학생증 등  
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 
신분증명서

• 투표용지에는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(㉠)를  
사용하여 하나의 후보자·정당란에만  
기표해야 합니다.

### [ 무효로 처리되는 사례(예시) ]

- 기표(㉠)를 하지 않고 문자 등을 표시한 것
- 비치된 기표용구가 아닌 것으로 표를 한 것
- 성명을 적거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
- 둘 이상의 후보자란에 표(㉠)를 한 것 등

제 21대 국회의원선거 4월15일

모두함께 투표하여  
참된일꾼 뽑아내자



##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요



- **선거일** 4. 15.(수)
- **임기** 4년(2020. 5. 30. ~ 2024. 5. 29.)
- **선출정수** 300명 (지역구 253, 비례대표 47)  
'20. 3. 16.까지 실시가 확정된 재·보궐선거는  
동시 실시됩니다.
- **주요 선거일정**
  - 선거인명부 작성 : 3. 24. ~ 3. 28.
  - 후 보 자 등 록 : 3. 26. ~ 3. 27.
  - 선 상 투 표 : 4. 7. ~ 4. 10.
  - 사 전 투 표 : 4. 10. ~ 4. 11.
  - 투 표 및 개 표 : 4. 15.



- 선거와 관련된 금품·음식물 등을 받으면 과태료  
최고 3,000만원
- 선거범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

### 선거법 위반 신고

- 선거관리위원회 : 국번없이 **1390** ([www.nec.go.kr](http://www.nec.go.kr))
- 경찰청 : 국번없이 **112** ([www.police.go.kr](http://www.police.go.kr))

##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시다



**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**(2002. 4. 16. 이전 출생)의  
주민등록자에게 국회의원(지역구 및 비례대표)  
선거권이 있습니다.

**다만,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은** 만 18세 이상의  
국민으로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(3. 24.)  
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합니다

-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  
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안에 주민  
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-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제1항제3호(재외국민)에 해당  
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 
올라있고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 
있는 사람  
※ 주민등록이 3개월 미만인 재외국민은 비례대표  
국회의원 선거권만 있음

## 선거인명부에서 선거권을 확인하세요



**열람 및 이의신청** 3. 29. ~ 3. 31. 오전9시 ~ 오후 6시  
※ 인터넷 열람은 기간 중 24시간 가능

시·군·구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(통상 읍·면사무소,  
동주민센터) 또는 시·군·구 홈페이지에서 선거인  
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##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 하세요



신분증만 있으면 선거권자 누구나 신고없이 전국  
읍·면·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 
가능합니다.

• **투표일** 4. 10.(금) ~ 4. 11.(토)  
오전 6시 ~ 오후 6시

## 투표소에 가기 어려우면 거소투표 신고하세요



- **신고기간** 3. 24.(화) ~ 3. 28.(토)
  - 가까운 시·군·구청 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  
센터에 신고서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.  
※ 병원·요양소에 입원한 사람들은 병원 내에  
비치된 거소투표신고서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영내·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·  
경찰, 병원·요양소에 머무는 사람, 신체에  
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 
거소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.